

학무회 심의를 거친 순천대학교 취·창업전략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1년 2월 17일

순 천 대 학 교 총 장

순천대학교규정 제 1045 호

순천대학교 취·창업전략위원회 규정

순천대학교 취·창업전략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칙 제23조에 따라 순천대학교 취·창업전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순천대학교 취·창업전략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 내 취·창업 지원 전략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대학 내 취·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3. 대학과 정부의 각종 취·창업 지원사업 연계
4. 그 밖에 총장이 취·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, 대학원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단장, 인재개발본부장(대학일자리센터장), 교육혁신본부장, 창업지원단장, 국제교류교육원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재개발본부장이 된다.

제4조(임기)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인재개발본부 취업지원실장이 된다

제8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<2021. 2. 17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